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7119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합자조합[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2. 14.

판 결 선 고 2020. 4.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9. 원고에게 한 등록면허세 26,388,000원, 지방교육세 5,776,000원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1) 원고는 소장에서 대표자를 'C'로 특정하여 기재하였으나, C은 원고의 대표자인 업무집행조합원(무한책임조합원) B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대표자 기재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참고로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금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등록면허세의 경우 26,400,000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27. 상법 제86조의2에 따른 합자조합의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설립등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인 22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뒤,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세율(0.4%) 및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중과세 규정인 같은 조 제2항의 중과세율(300%)을 각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26,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5,280,000원 합계 31,680,000원(이하 합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9. '원고는 민법상 조합과 동일하게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그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4호의 기타등기의 세율(건당: 12,000원)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3.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의 조합원 구성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으며, 원고 규약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정하고 있다.

[표1]

지방교육세의 경우 5,280,00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서 각 취소를 구하고 있는 금액 중 ① 등록면허세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세율(건당 12,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등록면허세 12,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이나, ② 지방교육세 부분은 당초 신고·납부한 '5,280,000원'이 아닌 '5,776,000원'으로 특정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다만, 이를 단순 오기로 보기도 어려워 결국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으로 특정하여 기재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구분	조합원명	출자금액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무한책임조합원)	B 주식회사	550,000,000원	25%
유한책임조합원	주식회사 D	550,000,000원	25%
	E 주식회사	550,000,000원	25%
	F	550,000,000원	25%
계		2,200,000,000원	100%

[표2]

제4장 조합의 운영

제25조.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3.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5. 조합재산의 배분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유지 및 보관 등 조합의 회계처리
7.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조합채무의 변제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는 업무

②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로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제26조. (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본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다만,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 또는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조합업무의 집행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조합 및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상법 제86조의2에 따른 합자조합의 형태로 설립되었는데, 상법상의 합자조합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 내지는 유사하게 취급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합자조합의 설립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마치 합자조합인 원고가 영리법인과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영리법인 설립등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당초 원고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잘못 적용된 것이 분명한데,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각 특정 등기 항목과 관련된 세율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이외에 '기타등기' 항목에 대해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4호의 세율(건당: 12,000원)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

가. 어떤 단체가 행정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인처럼 법에 의하여 그 법인격을 부여받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비법인 사단'이라 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등 참조).

한편, 2011. 4. 14. 개정된 상법에는 '합자회사'와는 다른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상법 제86조의2는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상 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며, 특히 당초 상법개정안에서는 합자조합에 대한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었다가 이러한 조항은 조합으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따라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합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중 선정당사자를 뽑아 그를 소송당사자로 내세우거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하여 그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하게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합자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법인격이 없는 합자조합이 직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의 지위'와 유사하다는 전제에서 스스로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상법상의 합자조합 형태로 설립되었기에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결과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실제 원고의 규약 제25조 제1항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규약 내용은 원고가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가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별지]

관계 법령

■ **상법**

제86조의2(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6조의3(조합계약)

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총조합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에 대한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8.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9.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조합의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12.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3.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제86조의4(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86조의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의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9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
2.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86조의8(준용규정)

①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 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②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의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④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이용저해율),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 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증구) 또는 증감구(증감구):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감구):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 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양식업권 등록

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6-18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④ 제2항은 제1항 제6호 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끝.